미진이지비아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017.07.03.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7.07] 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의 판단 기준일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7)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청약자(특별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청약자가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 청약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5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86호)]에 의거, 8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공동주택 대상 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2017.04.07.이전부터 계속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적용지역-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관광특구 6.2㎢제외),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1·2순위 모두 인터넷청약이 가능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청약통장 가입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에 旣 포함)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 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 모든 주택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 민간택지 / 기장군 – 모든 주택
  ※ 금융규제(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 부채상환비율) 강화
  – 집단대출 LTV 강화(70% → 60%), DTI 신규 적용(50%), 단,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민층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LTV 70% 유지, DTI 60%를 적용함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5.02.27.)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계약금을 모두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 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적발 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07.03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 -35925호(2017. 07. 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85-3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2개동 총 1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9세대 포함[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1700083701	74.9841	74	52	74.9841	26.1199	101.1040	38.3295	139.4335	18.3507	5	5	5	1	16	36	2
	201700083702	84.9971(A)	84(A)	131	84.9971	29.5839	114.5810	43.4477	158.0287	20.8012	13	13	13	4	43	88	3
	201700083703	84.9971(B)	84(B)	1	84.9971	29.5930	114.5901	43.4715	158.0616	20.8064	–	–	–	–	–	1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별 구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10%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17.08.20	2017.10.20	2018.03.20	2018.08.20	2019.01.20	2019.06.20	2019.11.20	입주지정일
74.98	52	102동 1~2호	2~6층	10	151,601	275,699	427,300	20,000	22,730	42,730	42,730	42,730	42,730	42,730	42,730	128,190
			7~10층	8	151,601	306,199	457,800	20,000	25,780	45,780	45,780	45,780	45,780	45,780	45,780	137,340
			11~15층	10	151,601	330,699	482,300	20,000	28,230	48,230	48,230	48,230	48,230	48,230	48,230	144,690
			16~20층	10	151,601	355,199	506,800	20,000	30,680	50,680	50,680	50,680	50,680	50,680	50,680	152,040
			21~25층	10	151,601	377,499	529,100	20,000	32,910	52,910	52,910	52,910	52,910	52,910	52,910	158,730
			26~28층	4	151,601	398,899	550,500	20,000	35,050	55,050	55,050	55,050	55,050	55,050	55,050	165,150
84.99 (A)	131	101동 1~4호	2~6층	19	175,094	309,106	484,200	30,000	18,420	48,420	48,420	48,420	48,420	48,420	48,420	145,260
			7~10층	16	175,094	343,806	518,900	30,000	21,890	51,890	51,890	51,890	51,890	51,890	51,890	155,670
			11~15층	20	175,094	371,506	546,600	30,000	24,660	54,660	54,660	54,660	54,660	54,660	54,660	163,980
			16~20층	20	175,094	399,206	574,300	30,000	27,430	57,430	57,430	57,430	57,430	57,430	57,430	172,290
			21~25층	20	175,094	424,506	599,600	30,000	29,960	59,960	59,960	59,960	59,960	59,960	59,960	179,880
			26~28층	12	175,094	448,806	623,900	30,000	32,390	62,390	62,390	62,390	62,390	62,390	62,390	187,170
			29~34층	24	175,094	473,106	648,200	30,000	34,820	64,820	64,820	64,820	64,820	64,820	64,820	194,460
84.99(B)	1	101동 1호	2층	1	175,094	309,106	484,200	30,000	18,420	48,420	48,420	48,420	48,420	48,420	48,420	145,26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택과에 승인을 받은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 [추가선택 옵션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별도계약 품목은 통합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 포함된 금액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분양 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는 총 6세대로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저층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서측 50m도로 선에 설치한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보도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입주자가 보유하고 토지소유자는 불특정다수인이 불편 없이 공공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 상 공공도로 보수기관이 보수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입주자)는 적극 협조를 하고 보수비용은 토지소유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도로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어 토지사용에 제한이 따르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하여야 함.(공공도로의 범위는 폭 3m, 지상에서 지하 2m 이하까지 임)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또한, 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계약 품목의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함(중도금 및 잔금, 별도계약품목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별도로 부과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4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	13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13	–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5	13	–	1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	4	–	5
합계	16	43	–	5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 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부산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 일반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 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존·비속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특별공급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본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전입 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최초 주택규모선택 후 수시변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40% / 추첨제 6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기타 시·군(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 "Ⅸ. 유의 사항"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 보다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제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청약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entum-izibia.com)에 공개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에 해당.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Ⅳ.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특별 공급	일반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17. 07. 12(수) 10:00 ~ 16:00	• 견본주택 방문 접수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자	2017. 7. 13(목) 08:00 ~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1순위 기타지역	부산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 경남 거주자	2017. 7. 14(금) 08:00 ~ 17:30		
	2순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17. 7. 17(월) 08:00 ~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당해지역(부산 3개월 이상)" 거주자는 "당해지역(부산 3개월 이상)"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당해지역(부산)"에 전입제한일(3개월 이상 거주)이 있는 경우 "당해지역(부산)"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위반 시 부적격 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청약통장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주택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1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청약 1순위)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 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특별 공급	• 일시 : 2017. 7. 12(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또는 당사 홈페이지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17. 7. 21(금) •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 홈페이지(www.centum-izibia.com)
일반 공급	• 일시 : 2017. 7. 21(금)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centum-izibia.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7. 7. 21(금)~ 2017. 7. 30(일)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 7. 2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7. 7. 26.(수) ~ 2017. 7. 28.(금) 3일간, 10:00 ~ 16:00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 내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O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O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01-2048-6441-07	국제자산신탁(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단, 착오 기재한 청약가점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 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중복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 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단지 및 단지 내의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광안대교의 인접 및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서측 50m 도로 선에 설치한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보도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입주자가 보유하고 토지소유자는 불특정다수인이 불편 없이 공공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 상 공공도로 보수기관이 보수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입주자)는 적극 협조를 하고 보수비용은 토지소유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도로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어 토지사용에 제한이 따르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하여야 함.(공공도로의 범위는 폭 3m, 지상에서 지하 2m 이하까지 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계약자 융자지원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주택으로 2016년 10월 1일 발효된 경제정책 방향 중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 및 보증 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중 1회차 중도금부터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무이자융자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개시일 이전까지는 사업주체가 납부(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함.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0년 07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Ⅶ.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납부)	잔금(90%) (입주지정일 납부)	비고
74.9841	10,700,000	1,070,000	9,630,000	
84.9971(A)	12,100,000	1,210,000	10,890,000	
84.9971(B)	12,100,000	1,210,000	10,89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부산은행	101-2048-6456-01	국제자산신탁(주)

- 발코니확장대금은 상기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 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함.
- 발코니 면적은 (확장포함)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면적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샤시 및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일부) 및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창호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단, 사용검사 및 잔금 납부이후 설치 가능)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타입)	구 분	설 치 위 치	제조사	설치 대수	금액	비고
74.9841	선택1	거실+안방	삼성전자	2대	3,60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대	6,200,000	
84.9971(A) 84.9971(B)	선택1	거실+안방	삼성전자	2대	3,60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대	6,200,000	

※ 상기 실별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함.
※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계약 선택 시 거실과 안방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천장형 에어컨 옵션행사 가격은 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표기(침실1,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계약일정 및 납부방법,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01-2048-6456-01	국제자산신탁(주)

Ⅷ.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관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설치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침실/주방/식당/복도바닥재,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바닥방수, 현관바닥, 발코니바닥(석재, 타일 포함)
벽지	벽지(아트월,타일, 석재, 무늬목, 도장 등 포함), 천장지(도장 포함)	우물천장, 몰딩, 경량벽
조명 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등 제외)	욕실천장 조명기구, 배관, 배선(스위치 및 콘센트 등)
욕실	타일, 석재(바닥, 벽, 젠다이, 세면대상판 등), 욕실장,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천장, 방수(바닥, 벽체), 바닥미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설비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주방 가구	주방가구(주방 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기기류(쿡탑 등), 주방TV, 주방수전	후드,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벽체 대리석 포함), 수납장	
창호	창호(문틀, 문짝, 문선, 하드웨어포함)	가틀(세대내 창호부위), 커튼박스, 현관문, 발코니PL창호, 디지털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

타 입	74	84(A)	84(B)	비 고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	24,204,290원	27,430,690원	27,432,860원	

※ 상기금액은 취득세 등 미포함 금액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주택형(타입)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으로 계약한 세대의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완료 이후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등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한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Ⅸ. 기타

▣ 유의사항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관련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분양공급자(시행자) 겸 위임자 미진이엔시(주), 수임자 국제자산신탁(주), 책임준공 시공사 미진건설(주)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자금관리"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행사는 상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국제자산신탁(주)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양금은 수임자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분양계약서 상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자 겸 위임자에 있으며, 국제자산신탁(주)는 본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임자로서 시행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계좌개설 및 통장 보관/미진이엔시(주)의 요청에 따른 자금집행)를 수행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지 아니한다.
– 상기 아파트(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시행상의 손실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시공상의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수임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 계약의 해제 등 기타 사유로 분양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은 시행자와 국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자금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계좌 잔고 한도 내에서 반환될 수 있으며, 신탁계좌의 잔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수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의 자기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17.07.03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시, 청약조정대상주택의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지정기간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약 및 재당첨제한을 받게 됨.
-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공급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2순위자 포함)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입주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팜플렛) 등 분양 홈페이지 상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사진, 마감재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인쇄물(팜플렛) 등과 기타 홍보물 상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및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의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모든 자재는 자재 품절,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와 시공업자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인쇄물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별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향, 조망이 다르며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주택형의 경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주택형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습니다.(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존)
- 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내용과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현황(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사업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 디자인계획,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장소인 광장,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각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정책 변경,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면의 형태 변경으로 인해 동일 주택형의 일부 세대는 다른 세대와 서비스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단위세대 평면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서측에 광안대교 및 50M도로가 접하고 있어 방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소음, 진동, 비산분진 등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도로관리청, 행정청 및 사업주체에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Ⅹ.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공통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서측 50m도로 선에 대지일부가 공공도로(보도)로 설치되며, 공공도로의 토지소유권은 입주자가 보유하지만 불특정다수인이 불편 없이 공공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 상 공공도로 보수기관이 보수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입주자)는 적극 협조를 하고 보수비용은 토지소유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도로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어 토지사용에 제한이 따르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공공도로의 범위는 폭 3m, 지상에서 지하 2m 이하까지 임)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당 단지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및 동선 등이 계획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서측의 주출입부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의 기축 및 신축건물 등에 의해 당 단지의 일부 세대에 조망 및 채광, 일조 등 생활권에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입면 구조물, 옥상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 단지 서측에 광안대교 및 50M 도로가 접하고 있어 방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소음, 진동, 비산분진 등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옥상 파라펫 형태 등),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 외부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및 동 표시 등은 지역 가이드라인과 광고물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입면디자인,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각 주동의 구조물 등에 의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외도로(단지주변도로, 단지내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출입구) 및 단지 주·부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 각종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동입면에는 일부층에 한하여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당세대 및 주변 일부세대에 눈부심 및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환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배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창호형태 및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상세설계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면의 옥탑부 및 측벽 등에 BI마크의 설치로 눈부심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경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설비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일부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조명,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비주거시설의 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부 세대는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외부도로 ,단지출입구, 주차장 진입로 등에 인접하여 소음 및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당 단지 북서측으로 부산지하철 2호선이 지하로 지나가며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	각 주동하부에 계획되어진 부대복리시설의 사용에 의하여 일부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향후 부대복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시 분양홍보물에 기준하여 동등수준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이며 별도로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각동 1층 출입구 인접부에는 생활폐기물집하장 및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발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편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주동	공통	차량출입구는 단지 서측으로 공동주택전용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비실은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량출입구와 인접한 주동 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주차, 확장주차, 경형주차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장애인주차는 1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서 각 주동으로 이어지는 동출입구는 동선의 길이 및 폭 등이 상이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주동 1층출입구와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동의 층별E/V홀은 창호계획 등에 따라 자연채광 및 환기의 정도가 상이하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색채 및 디자인과 옥외 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또는 인허가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색채특화를 위하여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각동별 필로티 및 지상주차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동별 1층의 각동 출입구와 인접하여 생활폐기물집하장이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발생 등 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하차량의 정차구간은 제한되어 관리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당 단지의 경우 별도의 문주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동 저층부의 1~4층의 외부 일부분에 석재마감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입면마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마다 조망은 상이하므로 이는 계약 전에 고객께서 판단하셔야 하며, 입주 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세대	공통	비확장세대는 별도의 외부사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일부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대의 층간소음최소화를 위하여 THK30(경량1급충격음, 중량충격음3급 이상 인증제품)층간소음완충재 시공예정이나, 입주 후 입주자의 생활습관이나 시공오차 등으로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세대내 통합단자함 및 전원반 설치로 인하여 벽체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시험 및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피공간의 외부창호는 안전상 화재 및 비상시에만 개폐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피공간으로는 항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피공간에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마감재치수 및 설치위치, 시공디테일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자재(석재등) 및 천연유사재(강마루, 인조대리석 등)의 경우 본 공사 시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 디테일 등은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에는 별도의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방가구 상판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카탈로그 상에 제시되는 확장형 선택평형을 제외하고,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은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합니다.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의 발코니 확장여부 선택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가용공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대피공간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공간이며, 별도의 천정마감이 없습니다.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마감재자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치 및 설치는 평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 단위세대의 경우 주방후면발코니의 물 쓰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뒷발코니(세탁기 발코니)천정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면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됩니다.
		동하부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가 설치되는 후면 및 바닥, 천정부분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안방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평면의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양홍보물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단위세대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CG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됩니다.(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간의 협의 및 풍압검토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건립평형 외 시공되어지는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게 시공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천정형냉난방기는 견본주택전용으로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 환기장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		공동주택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된 단지이며, 시설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공유면적(대지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및 상가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합필 등으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부 대지가 도로(차도 및 보행자도로 등)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차도 및 보행자도로 등)가 대지 지분에 편입 시 도로의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이에 따른 대지지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카탈로그,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등을 확인하여 평면도, 배치도,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습니다.
		당 단지 서측에 광안대교 및 50M 도로가 접하고 있어 방음벽을 설치하므로 일부 저층세대는 미관 또는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필히 현장 및 도면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원)	비 고
건축감리	주)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743,676,120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소방·통신감리	대원포비스(주)	64,900,000	
구조감리	도원E&C	41,250,000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통기량 2㎥/h · ㎡ 미만
고효율 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전동기, 난방, 급탕, 급수펌프)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 난방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312017-101-0001100호	₩70,531,5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구 분	주택 또는 단지 내 상가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 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 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유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 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상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등록번호

구 분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시 행 사	미진이엔시(주)	604-81-16564
시 공 사	미진건설(주)	605-81-35899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 분양사무소 (TEL. 051-742-2500)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centum-izibia.com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견본주택 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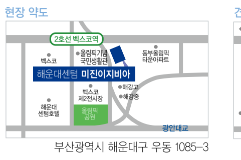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85-3

견본주택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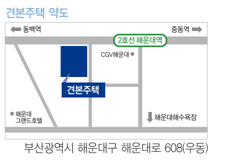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우동)

시행
시공
미진E&C주식회사 미진건설주식회사

분양
문의
051) 742-2500